

## 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337호

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9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#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

#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(안 제12조①1호)
- 나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(안 제12조①2호)
- 다.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폐쇄·청산시 보유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,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(안 제12조①3호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(월)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가계금융과, 02-2100-2512, FAX: 2100-2639, e-mail: saerom76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 ※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
- 전자우편 : saerom76@korea.kr
- 팩스 : (02) 2100 - 2639

※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(안)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sc.go.kr>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